

## 라.정관 및 운영세칙

# 정 관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장학회는 금광교회와 성남지역 학생의 장학금지급, 교육기관지원, 학술연구비지급, 시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명칭)

이 장학회는 선병문장학회 (이하 “장학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###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3번지에 둔다

### 제4조(사업)

①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장학금지급
2. 교육기관 지원
3. 학술연구 우수자 선정 연구비지급
4. 시상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### 제5조(장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)

① 이 장학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② 이 장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.

## 제2장 회 원

### 제6조(회원자격)

- ① 이 장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이 장학회에는 개인 뿐 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###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장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장학회의 자료를 제공받으며, 장학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### 제8조(회원의 탈퇴)

이 장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### 제9조(회원의 제명)

이 장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장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## 제3장 임 원

### 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- ① 이 장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6 명

2. 감사 2 명
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.

#### 제11조(상근이사)
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부이사장과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부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12조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
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(임원의 선임방법)

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과 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5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

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(부이사장, 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#### 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, 위임(장)된 경우에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3. 장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, 이사회 및 교회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
## 제4장 총 회

#### 제18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장학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

### 제19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11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
### 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미 과반 시, 재적이사의 2/3이상 동의에 따라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이사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### 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장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## 제5장 이 사 회

### 제23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24조(의결 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

### 제25조(의결제척 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장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# 제26조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이사장 위임시에 부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

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

#### 제27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부이사장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28조(이사회회의록)

-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·날인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장학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.

#### 제29조(서면의결 금지)

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### 제30조(재산의 구분)

- 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.
-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-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(고 선병문 유가족-1억, 금광교회-2억)
  -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- 3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-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[별지목록 1]과 같다.
  -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[별지목록 2]와 같다.

### 제31조(재산의 관리)

- ①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.증여.임대.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장학회가 매수.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장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.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단,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[별지목록 2]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 **제32조(재산의 평가)**

이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### **제33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**

이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### **제34조(회계의 구분)**

- ① 이 장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### **제35조(회계원칙)**

- ① 이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② 이 장학회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.

### **제36조(회계연도)**

이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**제37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**

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#### **제38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**

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이 장학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이 장학회의 설립자
2. 이 장학회의 임원
3. 이 장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#### **제39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**

① 이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회에 제출한다.

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② 이 장학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.

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. 다만, 이사회(감사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.

## 제7장 보 칙

### 제40조(정관변경)

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변경사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
### 제41조(해산)

이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(감독청의 허가를 받아) 해산한다.

### 제42조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장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결 및 교회승인에 의해 처리한다.

### 제43조(시행세칙)

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44조(광고사항 및 방법)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성남지역의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
1. 장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총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